

# 한국어능력 부족 외국인 유학생 학과진입 및 전공과목 수강신청 제한 제도 시행(안)

## I. 현황

1. “우수 외국인학생 유치 및 육성방안”(입학관리팀-716, 2015.10.29.)에 따라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대계열 신입학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는 학과진입을 제한하는 정책 확정, 관련 지침인 대계열 입학생 학과 진입 지침에 세부사항 기 반영
2. 대계열 입학생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“외국인 유학생 학습력 제고 방안”(외국인유학생지원팀)에 따라 조건이 동일한 학과별 신입학 외국인 유학생은 2학년 진입은 허용하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전공과목 수강신청은 제한하는 것으로 정책 확정(지침 미 반영상태)

## II. 시행(안)

1. 대상자 : 2016학년도 이후 학사과정 순수외국인 신입학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
2. 한국어능력 조건 기준 : TOPIK4급이상 또는 성균어학원4급 이상 과정
3. 한국어능력 조건 충족 증빙 : TOPIK4급 이상 성적표 또는 성균어학원4급 이상 과정 수료증
4. 한국어능력 조건 증빙 제출처 : 외국인유학생지원팀
5. 제출기한
  - 1학기(3월 학기) 2학년 진입예정자 : 직전년도 12.30까지
  - 2학기(9월 학기) 2학년 진입예정자 : 당해년도 6.30까지
6. 제한사항
  - 대계열 입학자 : 조건 충족학기까지 학과진입 배제(학과진입 신청은 할 수 있으나 변경기간에 전산시스템에

접속 할 수 없으며 기 입력된 신청내역을 삭제함)

- 학과별 입학자 : 조건 충족학기까지 전공과목 수강신청 제한

7. 제한적용자 조치사항(대계열입학자)

- 2학년 진급은 하나, 소속은 당초 입학한 대계열에 잔류하며 학부대학의 학사관리를 받음.
- 추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학기에 학과 진입 신청할 수 있음

8. 제한적용자 조치사항(학과별입학자)

- 2학년 진급을 하고 소속도 당초 입학한 학과가 되며 학과가 속한 단과대학의 학사관리를 받음.
- 조건충족학기 다음 학기 수강신청부터 전공과목 수강신청 할 수 있음

9. 시행일 : 2016.3.1.

10. 최초 적용학기

- 대계열 입학자 : 2016.2학기 전공지망 신청 및 변경
- 학과별 입학자 : 2017.1학기 수강신청

11. 전산시스템 개발 : 학과배정시스템, 학적시스템, 수업시스템과 연동하여 외국인 유학생 정보 관리시스템에 반영

12. 업무담당

- 국제처 : 업무 총괄, 한국어능력 증빙 접수 및 전산입력, 전산시스템 개발, 학과별입학생 전공과목 수강신청 제한 관련 업무, 학생 홍보 총괄
- 학부대학 : 대계열입학생 학과 배정, 학생 홍보 지원

13. 세부사항 지침반영

- 대계열 입학자 : 대계열 입학생 학과 진입 지침에 기 반영
- 학과별 입학자 : 외국인 유학생 관리·지원 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 예정

**【신·구 조문 대비표】**

현 행	개 정 (안)
<p>&lt;조 신설&gt;</p>	<p><b>제13조(한국어능력 조건 충족 증빙 제출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16학년도 이후 학사과정 순수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신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2학년 진입 전까지 소정 기준의 한국어능력 증빙(이하 ‘한국어능력 증빙’이라 한다)을 제출하여야 한다.</li> <li>○ 한국어능력 조건 충족 기준은 아래와 같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TOPIK4급 이상 성적표 또는 성균어학원4급 이상 수료증</li> </ul> </li> <li>○ 한국어능력 증빙은 아래 기간 내에 외국인유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학기(3월) 2학년 진입예정자 : 12.30</li> <li>- 2학기(9월) 2학년 진입예정자 : 6.30</li> </ul> </li> <li>○ 한국어능력 증빙의 유효기간, 취득시기(입학 전, 입학 후)는 구분하지 아니한다.</li> <li>○ 입학원서 제출 시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능력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는 기 제출한 증빙으로 갈음한다.</li> <li>○ 기 제출한 증빙이 국제품 인증 취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증빙으로 국제품 인증 취득한 것으로 처리한다.</li> </ul> <p><b>제14조(대계열 입학생 학과진입 제한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어능력 증빙을 기한 내에 제출치 못한 대계열 입학생은 해당 학기 학과진입을 제한한다.</li> <li>○ 위의 조건으로 인해 학과 진입하지 못한 대계열 입학생의 소속은 대계열로 잔류하며 학부대학에서 학사관리 한다.</li> <li>○ 학과에 진입하지 못한 대계열 학생이 추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학기에 학과 진입 신청을 허용한다.</li> </ul>

현 행	개 정 (안)
	<p><b>제15조(학과별 입학생 전공과목 수강신청 제한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어능력 증빙을 기한 내에 제출치 못한 학과별 입학생은 2학년 진입은 허용하나 2학년 1학기 이후 수강신청시 전공과목 수강신청을 제한한다.</li> <li>○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공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되었던 학과별 입학생이 추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학기부터 전공과목 수강신청을 허용한다.</li> </ul>